

의안번호	2113151
의 퇴 인	윤창현의원
회 답 일	2021.11.08.

성남시 지방행정농단과 도시개발사업 부정이익 진상조사 및 환수 등에 관한 특별법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표 1] 주요 재정수반요인

조항	주요 내용
지방행정농단과 부정재산 진상조사 및 환수위원회의 설치(안 제4조)	• 지방행정농단 및 부정재산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부정재산을 환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지방행정농단과 부정재산 진상조사 및 환수위원회 설치
위원회의 구성 등(안 제6조)	• 위원회는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
위원회의 활동기간(안 제8조)	• 위원회는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1년 이내에 활동을 완료 •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 의결로 그 활동기간을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음
사무처의 설치(안 제15조)	•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 설치
자문기구의 설치 등(안 제20조)	• 위원회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자문기구를 둘 수 있음
지방행정농단 피해지역 지원 특별회계의 설치(안 제34조)	• 지방행정농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지역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행정농단 피해지역 지원 특별회계 설치

자료: 제정안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지방행정농단과 부정재산 진상조사 및 환수위원회의 설치(안 제4조)

- 지방행정농단 및 부정재산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부정재산을 환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지방행정농단과 부정재산 진상조사 및 환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

□ 위원회의 구성 등(안 제6조)

- 위원회는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는 3명(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다), 국회가 선출하는 4명(상임위원 2명을 포함한다),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2명으로 대통령이 임명
 - －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 － 회계사·세무사·감정평가사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 － 대학에서 정치·행정·법 관련 분야, 언론 관련 분야, 사회복지 관련 분야 또는 교육·역사 관련 분야 등의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 － 교육계·언론계 또는 문화예술계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 위원회의 활동기간(안 제8조)

- 위원회는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1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여야 함
- 위원회는 정한 기한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 의결로 그 활동기간을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음

□ 사무처의 설치(안 제15조)

-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둠
- 사무처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두며, 부위원장이 사무처장을 겸함
-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함

□ 자문기구의 설치 등(안 제20조)

- 위원회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자문기구를 둘 수 있음
- 자문기구의 구성원은 역사연구가, 사회 및 종교지도자,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공무원, 관련 민간단체를 대표하는 자 중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위촉
- 자문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함

□ 지방행정농단 피해지역 지원 특별회계의 설치(안 제34조)

- 지방행정농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지역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행정농단 피해지역 지원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
-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이 법에 따른 환수금 및 추징금
 - －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이 법에 따른 위원회의 운영을 위한 경비
 - － 이 법에 따른 환수·추징 및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비
 - － 지방행정농단 피해지역 지원 경비

Ⅱ. 미첨부 근거규정

□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Ⅲ. 미첨부 사유

[표 2]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재정수반요인	추계 여부	추계 여부
지방행정농단과 부정재산 진상조사 및 환수위원회의 설치(안 제4조)	×	· 규모 등 추정 곤란
위원회의 구성 등(안 제6조)	×	
위원회의 활동기간(안 제8조)	×	
사무처의 설치(안 제15조)	×	
자문기구의 설치 등(안 제20조)	×	
지방행정농단 피해지역 지원 특별회계의 설치(안 제34조)	×	

자료: 제정안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지방행정농단과 부정재산 진상조사 및 환수위원회 설치(안 제4조, 제6조, 제8조), 사무처의 설치(안 제15조) 및 자문기구 설치(안 제20조)

- 위원회 설치에 따라 상임위원 및 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건비, 비상임위원 및 자문위원 회의참석수당, 위원회 운영비 및 건물 임차료 등의 추가재정 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text{추가재정소요} = \sum_t [\text{인건비}_t + \text{회의참석수당}_t + \text{위원회 운영비}_t + \text{건물 임차료}_t]$$

— 이때 t 는 추계기간

- 구체적인 위원회 규모와 사무국의 형태 및 구성 등이 향후 결정될 것으로 현시점에서는 추계가 불가능함

— 유사사례인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2018.3.13.) 공포에 따라

설치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사무처 운영을 위한 소요예산은 2021년 기준 118억 9,100만원임¹⁾

□ 지방행정농단 피해지역 지원 특별회계의 설치(안 제34조)

- 지방행정농단 피해지역 지원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피해지역에 지원을 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추가재정소요 = $\sum_t$ [지원 대상자 수_t × 평균 지원 금액_t]

- 이때 t는 추계기간

- 현 시점에서 특별회계의 규모를 결정할 환수금·추징금 규모와 일반회계 전입금을 추정할 수 없고, 특별회계를 통해 지원할 대상자 수, 피해의 범위·산정기준 및 지원금액 결정기준 등을 예측할 수 없으므로 추계가 불가능함

□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현 시점에서 제정안에 따른 지출 증가액을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

1)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위원회는 72명(정무직 3명, 파견공무원 14명, 경찰 2명, 별정직 53명)으로 구성되며, 인건비 29억 6,300만원, 기본경비 44억 5,500만원, 사업비 44억 7,300만원임(위원회 2022회계연도 예산안 개요 참조)

국회예산정책처	행정비용추계과
과장	임준기
추계세제분석관	이우영
연락처	02-6788-4664
	herr@na.go.kr
